

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

(①건설폐기물의 종류:)

(단위: 톤)

연월일	②위 탁 내 역						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					보관량	④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					결 재		
	위 탁 업소명	위탁업소소재지	성질과 상태	위탁량	운 반 업소명	위탁량 누계	파쇄	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		그 밖의 처리사항			중간 처리량 누계	폐기물 종류	발생량	처리자	처리 방법			처리량
								종류	양	방법	양									

(뒤 쪽)

<작성요령>

1.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,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, 건설오니, 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, 건설폐토석, 혼합건설폐기물,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2.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,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.
3. 양은 중량단위인 톤(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)으로, 성질과 상태는 고상·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4.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,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“배출신고자”로 기재하고, 수집·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·운반업자명을, 중간처리업자가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·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5.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·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